

고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4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7. 1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2026. 7. 10.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6. 7. 29.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가. 개정이유

- 법제처 권고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수탁자에게 부과 하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종사자의 정년에 대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안 제8조 제2항)
- 2) 보험 가입 주체 변경(안 제22조)
 - ‘군수 또는 수탁자’를 ‘군수’로 변경
- 3) 시설장의 명칭을 시설명과 일치시키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3조)
- 4) 보수지급일 및 근무일의 현행 반영(안 제9조 및 제10조)
- 5)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안 제10조 및 제12조)
- 6) 띄어쓰기 정비(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 성평등가족부 지침[청소년사업안내(Ⅱ)]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3) 협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특이사항 없음[복지지원과-13931(2026. 3. 27.)호]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735호
 - 예고기간: 2026. 3. 30. ~ 2026. 4. 20.(21일간)
 - 예고결과: 의견 제출 3건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등) 상담복지센터장의 직위 명칭을 “소장“에서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 로 현행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인용 조례의 제명 및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표현을 일제히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정비로써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센터 종사자의 정년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준용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준용으로 변경하고, 이미 폐지된 자치법규^{*)}를 인용한 징계 규정을 「고성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는 종사자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와 현행 운영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향후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년 및 징계 등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2조) 공유재산인 센터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주체를 현행 “군수 또는 수탁자“에서 “군수“로 일원화하고 관련 가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및 공제 가입 의무를 준수하여 시설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나.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과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7. 29.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